

1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

농림부 고시 제1996 - 58호
(1996. 9. 2.)

제 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종돈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돈사육농장의 인증요령 및 등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 “가축방역관”, “종축업”, “종돈”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 3조 우수종돈장인증대상

- ①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이하 “우수종돈장”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업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업의 등록을 한 종돈사육농장(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 한한다.
- ②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종돈장은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장, 전라남도는 축산 기술연구소장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해당농장에 대한 제5조제1항의 전염병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대상 전염병중(돼지오제스키병을 포함하여) 5종이상의 전염병이 1년간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대상 전염병중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종돈장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조 검사신청, 검사기관 및 검사성적 회신

- ① 제5조제1항의 전염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염병검사 신청서를 종돈장 관할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우수종돈장 인증을 위한 종돈장의 전염병 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는 농축산사업소, 전라남도는 축산 기술연구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확인검사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연구소가 실시한다.

③ 검사신청을 받은 시험소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 5조 검사대상, 전염병, 검사기준 및 방법

- ① 종돈장의 검사대상전염병은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위축성비염, 돼지부루세라병, 돼지적리, 특소플라즈마병, 유행성폐렴 및 돼지옴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전염병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

제 6조 인증신청등

- ①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관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증신청서 제출시 당해 종돈장을 관할하는 시험소장이 발행한 제4조3항의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인증신청서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축산기술연구소장에게는 당해 종돈장의 우수종돈확보 및 분양실적, 종돈분양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정보 제공실적, 양돈업계간의 신뢰성등을 각각 검증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제2항의 전염병검사성적서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관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케 할 수 있다.
- ④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제2

항과 제3항의 검증, 확인검사결과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종돈장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우수종돈장인증심의위원회

- ① 우수종돈장 인증과 등급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에 우수종돈장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수의과학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소속 관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 I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소속 관계 공무원 1인
 - II 수의과학연구소 관련업무 담당과장
 - III 축산기술연구소 종축 관리과장
 - IV 우수종돈장인증대상 종돈장 관할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관계공무원 및 시험소장 각 1인
 - V 축산·수의관련대학 교수, 축협중앙회·대한양돈협회·양돈산학연구회·한국종축개발협회 등 축산 관련단체와 축산농가,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축산수의 전문가중 7인 이내
- ④ 우수종돈장인증과 등급은 위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에 필요한 세부심의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수의과학연구소 병리진단과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8조 위원장의 직무등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수의과학연구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이 검증·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인증취소 및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종돈장 인증 및 등급에 관하여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 등급기준

- ① 우수종돈장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등급별 기준은 제5조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의 발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 I 1등급: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 II 2등급: 검사대상 전염병중 5종이상 발생하지 않는 농장

제 10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내용 변경등

- ①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수종돈장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2의 우수종돈장인증표지를 교부한 후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위원회에서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되지 아니한 종돈장 대표자에게 인증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의 대표자가 인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종돈장인증변경신청서를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우수종돈장인증변경신청서를 받은 수의과학연구소장은 변경 신청사유와 내용등을 확인한 후 우수종돈장인증서를 변경 교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검사비용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종돈장인증 대상종돈장의 전염병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소 및 수의과학연구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우수종돈장의 준수사항

수의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종돈장위생관리요령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13호)의 이행
- ② 관할 시험소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

사수검 및 협조

- ③ 농장내 종돈에 대한 질병예찰, 종돈의 분양, 이동 및 도축, 예방접종, 죽은 종돈에 대한 병성 감정실시사항등의 기록을 유지하고 주요사항을 매 분기마다 관할시험소장에게 보고
- ④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 규정 이행

제 13조 사후관리

- ① 우수종돈장 관할 시험소장은 해당농장의 종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소장은 우수종돈장에서 제5조제1항의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제1항의 검사결과 전염병발생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그 사실을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우수종돈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표지를 회수하거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 I 제2항의 전염병발생(우수종돈장인증서에 기재된 비발생 전염병에 한한다.)
 - II 제12조의 우수종돈장의 준수사항 위반

제 14조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 ①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I 우수종돈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돈장의 홍보방법
 - II 인증표지의 상품표시 사용 또는 광고허용 범위
 - III 우수종돈장인증표시 제작 및 부착방법
 - IV 기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염병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① 임상검사

- 가축방역관이 매분기마다 대상농장을 방문하여 검사대상질병별로 임상증상 유무를 관찰한다.

② 정밀검사

가.오제스키병

- ① 검사주기 : 6개월
- ② 사육규모별 최소검사 대상두수

번식돈군		육성돈군	
사육두수	검사대상두수	사육두수	검사대상두수
100두이하	25두	500두이하	20두
101-200	27	501-1,000	30
201-500	28	1,001-5,000	50
501두이상	30	5,001-10,000	70
		10,001두이상	100

- ②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돼지오제스키 병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부고시)”에 의함

나. 위축성비염

- ① 검사주기 : 6개월
- ② 검사대상 두수 : 도축장 출하돼지 10두 이상
- ③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비갑개골 검사 (절단부위 : 제1전구치 및 제2전구치 사이) 결과를 계측봉으로 측정하고 지수3이상을 양성으로 함
(계측봉) (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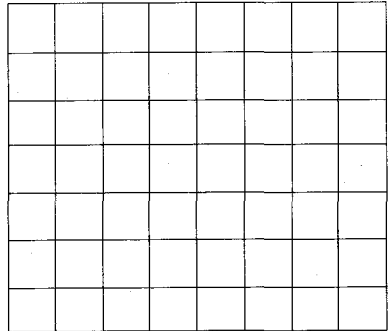
좌우의 합계	지수	비갑개 위축
9mm이하	1	음성
10 - 12mm	2	의양성
13 - 16mm	3	약간 위축
17 - 20mm	4	중간정도 위축
21mm 이상	5	심한 위축

※ 병변이 지수4이상일 경우에는 병원체검사 실시

다. 돼지부루세라병

- ① 검사주기 : 6개월
- ② 검사대상두수 : 검사대상은 모든 및 웅돈으로 하며, 검사두수는 오제스키병 번식돈군의 검사대상두수와 같음
- ③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부 고시)”에 의한 혈청반응검사 기준에 준함

(계측판)



라. 돼지적리

- ① 검사주기 : 6개월
- ② 검사대상두수 : 오제스키병 검사대상두수와 같음
- ③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 번식군이나 육성돈군에서 설사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설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분변 또는 기타 가검물로부터 원인균 분리시험을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합격
- ④ 종돈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첨가제(포유기간부터 이유직후까지는 허용)
 - 유기 비소제(Organic grsenicals)
 - 카바독스 • 타이로신제제
 - 디메트리디졸(Dimetridazole)
 - 스피라마이신 • 린코마이신
 - 버지니아마이신 • 오라퀸독스
 - 티아몰린 • 아프라마이신

(판정지수)

좌우의 합계	지수
0	0
1 - 4	1
5 - 19	2
20 - 49	3
50 이상	4

※ 병변지수가 3이상일 경우 병원체검사 실시

마. 특소플라즈마병

- ① 검사주기 : 6개월
- ② 검사대상두수 : 오제스키병의 검사대상 두수와 같음.
- ③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임상검사 결과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 혈청학적 또는 병원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합격

바. 유행성 폐렴

- ① 검사주기:6개월
- ② 검사대상 두수:도축장 출하돈 10두 이상
- ③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계측판으로 병변을 측정후 지수 3이상을 양성으로 한다.

사. 돼지옴

- ① 검사주기:6개월
- ② 검사대상두수:도축장 출하돼지의 10두이상
- ③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 돼지의 귀 주변 부위와 감염의심 부위의 피부각질에서 가검물을 채취, 현미경으로 관찰 음성일 경우 합격

[별표 2]

위생·방역관리 우수중등장인증표지

제 호	
○ 농장명 :	○ 종축입등록번호 :
○ 소재지 :	
○ 위생·방역등급 :	
상기 농장은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요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방역 관리 우수중등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수 의 과 학 연구 소 장	

30cm

40cm

※ 왼쪽에 검정글씨

[별지 제1호 서식]

전염병검사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중등장	④ 소재지		
	⑤ 농장명		
	⑥ 품 종	⑦ 사육규모	두(수)
상	⑧ 축사면적	동 m ²	⑨ 종축입 등록번호
	⑩ 사업장 반경 2Km 이내 돼지사육현황		호, 두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요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 가 축 위 생 시 험 소 (지 소) 장 귀 하			
[구비서류] 1. 축사배치도 1부 2. 용도별·일명(주명)별 사육두수 내역 1부			
274-08211일 '96. 8. 17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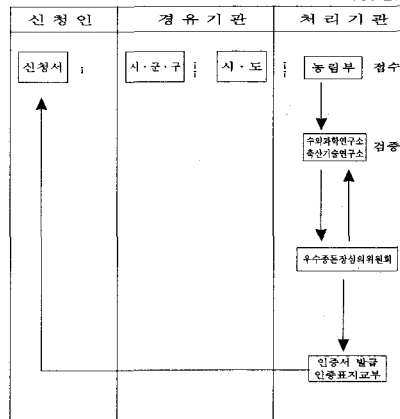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중등장	④ 소재지		
	⑤ 농장명		
	⑥ 품 종	⑦ 사육규모	두
상	⑧ 축사면적	동 m ²	⑨ 종축입 등록번호
	⑩ 영입개시일자 (축산업) 년 월 일 (종축업) 년 월 일		
⑪ 사업장 반경 2km 이내 돼지사육현황		호, 두	
⑫ 비발생 전염병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1. 전염병 검사신청서(제4조 규정) 1부 2. 종축입 등록증 사본(축산업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3. 축사배치도 1부 4. 사업장 반경 2km의 25,000분지 1 지도(지도에 사업장 위치표시) 1부			
274-08611일 '96. 8. 17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서	
① 농등장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④ 종축입등록번호	⑤ 사육규모	축사 동, m ²	
⑥ 비발생 전염병 (최종발생일자)			
⑦ 위생·방역등급			
⑧ 인증 조건			
⑨ 최초 인증 년 월 일			
상기 농장은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요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수 의 과 학 연구 소 장 (인)			
274-08711일 '96. 8. 17		210mm × 297mm 인쇄용지 폭과 120g/㎡	

[별지 제4호 서식]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변경신청서			
① 농등장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④ 종축입등록번호	⑤ 우수중등장인증번호		
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위생·방역관리우수중등장인증요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과 학 연구 소 장 귀 하			
[구비서류] 1.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중등장 인증서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건 3. 변경서류서 1부			
274-08811일 '96. 8. 17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국내 최초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사례

수의과학연구소

위생 및 방역관리가 선진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과 같은 우수한 종돈장 수준으로 향상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에 의한 검사

- 돼지 전염병 7종 검사 및 주요 전염병 임상관찰

국내 유통되는 종돈의 위생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염병검사기관의 1년간 정밀검사 및 검증 - 확인기관의 검사를 통한 인증 농장 선정

■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및 축산법 제26조 규정과 농림부고시 제1994-13호('94. 2. 17)를 통한 종돈장 위생 수준을 점검 시행중에 보완·발전시킨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농림부고시 제1996-58호, '96. 9. 2)에 의거 종돈장 위생검사 강화를 위한 전염병 검사기관에서 1년간 정밀검사와 검증·확인 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을 심의한 결과,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을 국내 처음으로 경북지역 2개 종돈장인 성림축산(대표:백동제)과 유학종축(대표:성낙희)에 대하여 인증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된 2개 종돈장은 관할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소장:김수웅)에 전염병검사를 신청하여 1년간 각종 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전염병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인증신청서 제출하였으며,

■ 농림부는 신청농가에 대한 검증·확인검사 추진을 수의과학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에 실시하게 하였으며,

■ 전염병검사 및 검증·확인검사성적을 분석하여 '98. 4. 10일경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12인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1등급의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선정되었다.

■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된 경북지역의 2개 종돈장인 성림축산과 유학종축은 '97. 1

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관할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 각종 전염병검사를 받아왔으며, 이지역의 양돈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종돈장으로서 꾸준한 종돈개량과 위생·방역관리를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농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성림축산은 강가에 위치하면서 덴마크로부터 종돈을 수입하여 지속적인 종축개량과 인근지역에 액상정액을 공급하는 AI센터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IMF 한파에도 사료값 선수금 지급등으로 안정적인 사료공급과 질병예방을 통한 종돈생산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유학종축은 산언덕에 자리잡고 주위는 과수원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곳으로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작년 연말 협성농산에서 영농법인화하면서 농장명을 유학종축으로 개명하여 의욕적인 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장장은 20년이상 농장을 지켜온 양돈인으로서 국내 하이브리드 생산 1호 농장이라고 자부심과 함께 사육사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돼지사육을 한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 농림부 축산위생과장(배삼호)과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소장(이재진)은 국내 종돈유통과 종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위생적인 돈육생산에 앞장서는 위생·방역에 선구적인 종돈장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아

까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본 인증제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와 축산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국내 종돈장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과정

■ 목 적

- ◇ 종돈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돈장을 인정하고
- ◇ 유통시키므로써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종축을 구입하여 질병피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근 거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및 축산법 제26조의 규정
- ◇ 농림부 고시 제 1996-58호 ('96. 9. 2)

■ 절 차 및 경 위

- ◇ 가축위생시험소에 인증 신청
- ◇ 1년간 전염병검사 실시후 농가 통보
- ◇ 농가는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
- ◇ 농림부는 인증신청서 접수 즉시 수의과학연구소와 축산 기술연구소에 검증·확인 검사 지시
- ◇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심의회 개최 (농림부 검증·확인검사 이후 20일이내 개최)
- ◇ 심의결과를 농가에 통보

전염병 검사

가. 신청 종돈장

종 돈 장	주 소 (대 표)	사육규모
유학종축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동 산 74 (성락회)	5,300두
성림축산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18 (백동계)	4,850두

나. 1차 전염병검사 기관:경북 가축위생시험소

◇ 신청시기:성림축산('96. 10), 유학종축('96. 12)

다. 전염병검사

- ◇ 검사기간:1997. 1 - 1997. 12 (1년간)
- 라. 전염병검사 성적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 ◇ 성림축산 및 유학종축에 대하여 1년간 정밀검사(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8종 질병 모두 음성이었음
- 대상질병:오제스키병,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홍막패렴, 적리, 특소플라즈마, 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심의 위원회 개최

- ① 개최일시 : '98. 4. 10 (금요일) 15:00
- ② 개최장소 : 수의과학연구소
- ③ 심의위원 : 12인
 - ◇ 위원장 수의과학연구소장
 - ◇ 간 사 수의과학연구소 병리진단과장
 - ◇ 위 원 축산국(방역계장), 수의연(세균과장, 기생충과장, 바이러스과장), 농진청(종축관리과장), 경북도(시험소장, 위생계장), 서울대 (유한상교수), 경북대(김봉환교수), 양돈협회(김형균 소장)

주요 심의내용

- 수의과학연구소의 확인시험 성적
 - ◇ 성림축산, 유학종축에 대한 오제스키병 등 8종 질병의 정밀검사(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전부 음성이었음
 - ◇ 대상질병:오제스키병,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홍막패렴, 적리, 특소플라즈마, 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종돈장 능력평가 의견
- 상기 관련성적 정밀검토후 의결
 - ◇ 인증내용 : 인증신청 2개 농장에 대하여 각각 우수 종돈장(1등급)으로 결정

금후 추진계획

- 매 6개월마다 위생방역 실태 확인 점검

(가축위생시험소)

◇ 기술지도:수의과학연구소

- 정부가 인증된 해당농장에 대하여 확인증 교부 및 양돈장 홍보토록 조치(상징마크, 언론매체 등)
- 인증 종돈장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정부 융자금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인증요령 개선대책

- 신청방법 간소화

신청농가 대신 직접 가축위생시험소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종결

(One stop service system)

- 시험소 전염병 최종검사시 수의과학연구소와 공동시험을 통한 신속한 민원해결로 검사기간 단축 및 검사결과 신뢰성 제고
- 114개 종돈장 위생·방역우수종돈장 인증제 적극 참여 유도로 질병없는 종돈 농가 보급 조기 실현

별첨 : 현장 검증·확인검사 내역

① 현지 방문조사

- ◇ 조사일시 : 1998. 3. 25 - 3. 27 (3일간)
- ◇ 조사자 : 수의연 병리진단과 및 세균과 연구원 2명
- ◇ 내 용 : 현지방문 역학조사 및 출하돈 도축검사

② 종돈장 역학사항

구 분	성립축산	유학종축
사 육 규 모	총5,413두	총5,340두
방 역	차량소독시설 설치운영	차량방역시설 강화예정
관 리	목욕 시설 완비 돈사출입자 의복 교체후출입 돈방출입시 발판소독	목욕 시설 완비 돈사출입자 의복 교체후출입 돈방출입시 발판소독
돈 사 시 설	3년전 최신무창돈사시설도입 (덴마크 기술자 설치) 자동소독분무시설 설치운영 일령별 돈방이 뚜렷이 구분	17년전 국내최초의 무창돈사설치 (미국 기술자 설치) 자동소독분무시설 및 자가발전시설 일령별 돈방이 미구분
위 생	대체적 양호	대체적 양호, 시설 노후화
임 상 관 찰	일부 이유돈 호흡기 증상 설사 없음	일부 이유돈 호흡기 증상 이유1일령 식이성설사(2복)
기 타	덴마크 종돈 사료공급 현재까지 안정공급 농장장(경력15년이상)	미국 하이브리드 종돈(국내1호) '97.9. 영농법인화, 유학종축(개명) IMF후 인력감축,사료공급차질,농장장 (경력20년이상)

③ 도축검사

구분	성립축산	유학중축
장소	고령도축장	대구도축장
두수	25두	22두
질병조사	마이코플라즈마: 2두(판정지수:1) 위축성비염: 2두(판정지수:1)	마이코플라즈마: 5두(판정지수:1) 위축성비염: 3두(판정지수:1)
판정결과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위축성비염: 음성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위축성비염: 음성
시료채취	혈청 25두 비강swab: 2점 폐조직: 2점	혈청 22두 비강swab: 3점 폐조직: 5점

- 도축검사 판정기준(위생.방역우수중돈장 인증 요령)
 - ◇ 마이코플라즈마: 판정지수 3이상일 경우 병원체 검사실시
 - ◇ 위축성비염: 판정지수 3이상일 경우 병원체 검사실시

④ 정밀검사

구분	진단법	성립축산			유학중축			
		검사두수	음성	양성	검사두수	음성	양성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25	25	0	22	22	0	
마이코플라즈마	PCR	2	0	2	5	0	5	
	원인균분리	2	2	0	5	5	0	
	병리조직검사	2	0	2	5	5	5	
부루셀라	혈청검사	RBPT	25	25	0	22	22	0
		SPT	25	25	0	22	22	0
위축성비염	원인균분리	25	25	0	22	22	0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혈청검사	25	25	0	22	22	0	

⑤ 축산기술연구소 검증·확인검사 성적

◇우수중돈확보, 분양실적 등에 대한 조사결과 : 양호

각국 질병검사 항목 (참고사항)

- 미국(8종):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적리, 오제스키병, 렘토스피라병, 음, 이, 부루셀라병
- 영국(7종):마이코플라즈마병(A), 적리(B), 오제스키병(C), 돼지염(D), 위축성비염, 돼지 연쇄상구균 감염증, 리스테리아병
- 덴마크(5종) :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적리, 오제스키병, 돼지 이·음